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로1 장인홍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는 교육경비 보조는 서울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현장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입니다.

□ 따라서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의 변동이 크고, 경기침체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의 전출률을 안정화하고자 합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통세의 ‘1000분의 6 이내’를 ‘1000분의 5이상’ 이상으로 규정하려 합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,

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